

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0년 2월 4일

국 무 총 리 정 세 군

국 무 위 원

국 방 부 장 관

정 경 두

● 법률 제16926호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

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헌병인”을 “「군인사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(이하 “군사경찰과”라 한다)에 소속된”으로 한다.

제43조제1호 중 “헌병과(憲兵科)의”를 “군사경찰과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령에 따른 기무부대”를 “「국군조직법」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(이하 “군사안보지원부대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6조제1호 중 “헌병”을 “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(이하 “군사경찰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령에 따른 기무부대에”를 “군사안보지원부대에”로 한다.

제68조의3의 제목 중 “헌병의”를 “군사경찰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헌병부대의”를 “군사경찰부대의”로, “헌병의”를 “군사경찰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헌병은”을 “군사경찰은”으로 한다.

제68조의4제2항 중 “헌병으로”를 “군사경찰로”로 한다.

제455조 중 “3일로”를 “7일로”로 한다.

제465조제3항 중 “3일”을 “7일”로 한다.

제501조의15제1항 중 “헌병부대의”를 “군사경찰부대의”로 한다.

제501조의16 중 “헌병부대의”를 “군사경찰부대의”로 한다.

제501조의17제2항 중 “헌병부대의”를 “군사경찰부대의”로 한다.

제501조의19제1항 중 “헌병부대”를 “군사경찰부대”로 한다.

제501조의26 중 “헌병부대가”를 “군사경찰부대가”로 한다.

제501조의27제1항 전단·후단, 같은 조 제2항 전단·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헌병부대의”를 각각 “군사경찰부대의”로 한다.

제501조의31제1항 중 “헌병부대의”를 “군사경찰부대의”로 한다.

제501조의32 중 “헌병부대의”를 “군사경찰부대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 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455조 및 제4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 및 준항고의 제기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헌병의 명칭이 일제 강점기 잔재이며 구시대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어 헌병의 수행 임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군사경찰로의 변경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